



# LEGAL UPDATE

방위산업·공공계약

Apr. 2024

## 방위사업에 대한 국가계약제도 특례 신설

방위사업 분야는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공공 조달 계약에 비하여 대규모·장기·고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지연 또는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사업계약의 근거로 삼아 왔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이와 같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이 모두 반영되지 못하였기에, 정부는 최근 방위사업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계약제도의 특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개정 방위사업법은 2024. 5. 1.부터 시행,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2024. 4. 1.까지 입법예고 후 시행 예정).

### 1. 주요 내용

#### 가. 수의계약 관련 특례 신설

- 국내 수리원이 존재하지 않아 국내정비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비, 구성품, 결합체에 대하여 해당 정비능력을 개발한 국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안 제61조 제3항 제8호).
-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생산·구매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i) 방산업체가 복수이고, (ii)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다면 가격 또는 금액이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인과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안 제61조 제4항).

#### 나. 국산품 우선 획득 제도 신설

- 정부가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이와 관련한 평가방법 등 절차를 정비함(법 제46조 제6항, 시행령 안 제61조의8)

#### 다. 개산계약 관련 규정 신설

- 개산계약과 관련하여 개산가격 결정 기준, 개산계약금액 조정, 정산 기준 등을 마련하여 개산계약 조정 및 정산을 원활하게 추진할 근거를 마련함(시행령 안 제61조의7).

#### 라. 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 신설

- 방위사업계약에 특화된 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①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 ② 지체상금 부과 및 감면, ③ 계약의 변경, ④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하여 심의·조정하도록 함(법 제6조 제2호 다목, 시행령 안 제61조의4).

#### 마.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

- 국방조달계약과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중에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고,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해서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구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 및 중도금 액수는 차등을 두고 있음(법 제46조의2 제3항, 시행령 안 제61조의9 제6항, 시행규칙 안 제37조의2).

#### 바. 핵심기술 등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입찰자가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시 핵심기술 등의 활용도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법 제46조의3, 시행령 안 제61조의10).

#### 사. 지체상금 부과감면 등 기준 마련

- 무기체계 연구개발(양산의 경우 방산물자에 한정), 핵심기술 연구개발 계약의 경우 부과되는 지체상금의 총액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함(시행령 안 제61조의 11 제2항).
-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체상금 감면할 수 있도록 함(법 제46조의4 제2항 제2호).
- 방위사업계약 이행지체의 원인이 (i)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하도급자에게 함께 있는 경우, (ii) 하도급자에게만 있는 경우, (iii) 가혹한 시험조건인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법 제46조의4 제2항 제3호).
- 방위사업의 종류 별로 지체상금률을 달리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함(시행규칙 안 제37조의3).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 1천분의 0.5
2. 「방위사업법」 제19조에 따른 구매 : 1천분의 0.75
3. 무기체계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정비 용역 : 1천분의 1.25

#### 아. 성실 이행,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변경 기준 마련

- 국방연구개발계약은 고도의 기술수준을 요구하므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 기간, 금액,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법 제46조의5 제2호 및 시행령 안 제61조의 12)

#### 자. 부당이득금 범위 구체화

- 방위사업법 제58조 제1항은 방산업체 등이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부당이득금 액수는 '계약금액이 부당이득사실에 따라 재산정한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함(시행령 안 제69조 제2항).방위사업법 제58조 제1항은 방산업체 등이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부당이득금액수는 '계약금액이 부당이득사실에 따라 재산정한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함(시행령 안 제69조 제2항).

#### 차.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세부기준을 보완

- 방위사업법 상 담합, 부정청탁 등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시 제재기간을 세부적으로 보완함 (시행규칙 안 제58조 제1항 [별표 3]).

## 2. 시사점

정부는 국가계약 중 방위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 이행 시에는 방위사업의 특수성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계약 변경, 지체상금 감면 기준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방위사업계약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국방조달계약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사전에 정부와 업체 간 입장 차이를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우 방위산업-공공계약팀은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s

### 박근배

파트너변호사

T. (+82) 2 6182 8384

E. [gbpark@yoonyang.com](mailto:gbpark@yoonyang.com)

### 김근호

파트너변호사

T. (+82) 2 6182 8542

E. [kimkh@yoonyang.com](mailto:kimkh@yoonyang.com)

### 홍범

외국변호사

T. (+82) 2 6182 8363

E. [bhong@yoonyang.com](mailto:bhong@yoonyang.com)

### 류우석

변호사

T. (+82) 2 6182 8110

E. [wsryu@yoonyang.com](mailto:wsryu@yoonyang.com)

### 김시철

고문

T. (+82) 2 6003 7565

E. [sckim@yoonyang.com](mailto:sckim@yoonyang.com)